

## 거창군 읍·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10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0. 1. 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폐지이유

○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·구·읍 또는 면에 설치·운영토록 위임된 농지관리위원회가 「농지법」의 개정 시행(2009.11.28 법률 제9721호)으로 폐지됨에 따라 군 관련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○ 농지관리 절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, 동 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·조치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「농지법」의 개정 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 또는 정비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우리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개정 법령과의 통일을 기하려는 것임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농지법」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
- 「농지법 시행령」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9조까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 : 생략
- 3) 규제심사 : 등록규제 폐지 2건(제6조, 제7조)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읍·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거창군 읍·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농지법」

### <2009.5.27 일부개정 전>

####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

**제44조(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)** ①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(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,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동지역만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·구(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는 동지역만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·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그 관할 구역에 농지가 없는 시·구·읍 또는 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시·도지사는 지역 특성과 농지 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·구·읍 또는 면에 하나의 농지관리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.

**제45조(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)** ①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29>

1.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

2. 관할 시장(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) 또는 군수가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인 시·구·읍·면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자

3. 관할 시·구·읍·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·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명

③ 위원장은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다만, 제44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 농지의 면적이 넓은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④위원장은 제46조제3호에 따른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

⑤위원의 임기·선임·해임, 농지관리위원회의 조직·회의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46조(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)**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
2.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
3.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
4.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**제47조(경비 보조)**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**제48조(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** 제45조제2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
<2009.5.27 일부개정, 시행 2009.11.28>

제3절 농지원부 <개정 2009.5.27>

제44조 삭제 <2009.5.27>

제45조 삭제 <2009.5.27>

제46조 삭제 <2009.5.27>

제47조 삭제 <2009.5.27>

제48조 삭제 <2009.5.27>

## □ 「농지법 시행령」

### <2009.11.26 일부개정 전>

####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 등

**제61조(농지관리위원회의 통합설치)** ①시·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농지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통합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·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.

**제62조(위원의 정수 등)** ①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·동의 수를 참작하여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

②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"이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. <개정 2008.6.5>

③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"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를 말한다.

**제63조(위원의 임기)**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64조(위원의 선임)**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리·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시·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(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제65조에서 같다) 또는 군수가 선임한다.

**제65조(위원의 해임)**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
2. 질병·징집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
3.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
4.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위원회(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

**제6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(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재적위원을 말한다)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7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68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법 제46조제4호에서 "농지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09.6.26>

1. 농지 및 농지의 소유·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
2.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약에 관한 확인
3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
4.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시·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위원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 및 시·구·읍·면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·복사,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9조 (수당 등)**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<2009.11.26 일부개정, 시행 2009.11.28>

제3절 농지원부 <개정 2009.11.26>

제61조 삭제 <2009.11.26>

제62조 삭제 <2009.11.26>

제63조 삭제 <2009.11.26>

제64조 삭제 <2009.11.26>

제65조 삭제 <2009.11.26>

제66조 삭제 <2009.11.26>

제67조 삭제 <2009.11.26>

제68조 삭제 <2009.11.26>

제69조 삭제 <2009.11.26>